

확인
OK?

최저임금

근로자도,
고용자도,
잊지 말고 확인

최저임금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이치현 최저임금

2026년
10월 1일^{부터}
시간액

1,195 엔

전년대비
55^{인상}엔

월급과 일급 모두 자신의 시간액을 계산해 봅시다



시간액을 계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해 봅시다!



"최저임금제도"는 나이 또는 파트타이머나 학생 등 근무 방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체크하고 싶은 임금(※1)과 근무지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액(시간액)을 비교표에 기입하여 비교해 봅시다!(※2)

최저임금액과의 비교방법

귀하의 임금과 해당하는 지역의 최저임금액을 기입해 봅시다(※2)

A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 엔 ≥ 최저임금액 (시간액) 엔
B 일급인 경우	일급 엔 ÷ 1일 평균 소정 노동시간 시간 = 시간액 엔 ≥ 최저임금액 (시간액) 엔
C 월급인 경우	월급 엔 ÷ 1개월 평균 소정 노동시간 시간 = 시간액 엔 ≥ 최저임금액 (시간액) 엔
D 상기 A, B, C가 조합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기본급이 일급이고 각종 수당 (직무 수당 등) 이 월급인 경우는 ① 기본급 (일급) → B의 계산으로 시간액을 산출 ② 각종 수당 (월급) → C의 계산으로 시간액을 산출 ③ ①과 ②를 합한 금액 ≥ 최저임금액 (시간액)

(※1)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임금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①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결혼 축하금 등) ②1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등) ③소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시간 외 할증 임금 등) ④소정 노동일 이외의 날의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휴일 할증 임금 등) ⑤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의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중, 통상 노동시간의 임금 계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심야 할증 임금 등) ⑥정근 및 개근수당, 통근수당 및 가족수당

(※2) 자세한 계산방법이나 성과급일 경우의 계산방법 등은 노동국 또는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로

業務改善助成金

최대 600만엔 지원

중소기업 사업자 여러분!

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업무개선지원금"을 활용합시다!

업무개선지원금이란

"업무개선지원금"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설비 투자를 실시하면서 "사업장 내에서 가장 낮은 임금(사업장 내 최저임금)"의 인상을 계획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설비투자 등을 실시한 경우 지급 요건에 따라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업무개선지원금 콜센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일본어만)

0120-366-440

業務改善助成金 検索



지급 주요 요건

✓ 사업장 내 최저임금이 2026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일 것

✓ 사업장 내 최저임금 인상

✓ 인상 후의 임금액 지불

✓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기, 설비 등의 도입

✓ 해고, 임금 인하 등의 불고부 사유가 없을 것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금 지급까지의 흐름

1 교부신청서, 사업실시계획 등을 사업장이 소재한 도도부현 노동국에 제출

심사

2 교부결정 후 제출한 계획에 따라 사업 실시

3 실시결과보고서, 지급신청서를 노동국에 제출

심사

4 지급

WEB에서 확인하기!

최저임금에 관한 특설 사이트 (일본어만)

最低賃金 特設サイト 検索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는 아이치 노동국 또는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로

愛知労働局 検索



임금 인상 특설 페이지 (일본어만)

임금 인상을 위한 지원책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賃金上げ特設ページ 検索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실시

임금 인상을 고민하시는 분은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센터와 상담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일본어만) 働き方改革推進支援センター 検索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 자금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는 사업장 내 최저임금의 인상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설비 자금 및 운전 자금의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일본어만) 働き方改革推進支援資金 検索

リサイクル適性(A)
この印刷物は、印刷用の紙へリサイクルできます。

(R8.9)